20억 기부 김인선 여사 | 10면 인터뷰

큰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김인선 여사는 기도 중 어려운 학생을
도우라는 음성이 뇌리에 스쳤다고 한다.
무엇보다 남편이 평생토록 일하고 일궈온
경희대학교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는 김인선 여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제캠퍼스 학식 논란 | 6–7면 기획

국제캠 학식 업체의 입찰 과정부터 잇따라 이물질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본다.

제 1713 호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대학주보

국제캠 문정식 신분변동, 회의체 학생대표 자격상실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국제】 우리신문 취재 결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문정식(중국어학 2018) 회장이 맡고 있던 교내 회의체 일부의 학생 대표가 총학 권예성(건축공학 2018) 부회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생회칙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직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교내 회의체에 학생 대표로 참여한다. 지난 9월까지 제17대 총장 선임제 국제캠 학생 대표 1인은 문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국제캠 학생 대표에는 권 부회장이 위원으로 추천됐다. 당시 권 부회장이 위원으로 추천된 이유는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으며, 권 부회장 역시 총추위 위원에 문 회장 대신 본인이 추천된 이유와 관련한 우리신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위원 역시 문 회장의 자리가 권 부회장으로 교체됐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 평의원도 문 회장을 대신해 권 부회장이 맡았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등심위 위원 교체 사유는 신분 변동으로 인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역시 대평의 평의원 교체로 동일한 사유를 언급했다. 전략기획팀은 이어 "학생지원센터로부터 문 회장의 신분이 변동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학생지원센터에 다시 위원 임의 추천을 요청해 문 회장을 권 부회장으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등심위 규정 제3조는 학생 평의원을 재학 중에 한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에서는 학생 위원이 휴학 및 졸업 등으로 인해 재학생이 아니게 된 경우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운영 규정 제3조 역시 학생 평의원 자격을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고 언급한다.

대평의 운영 규정 제5조는 신분변동으로 평의원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휴학 및 졸업,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이다. 지난 9월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비춘바, 문 회장은 현재 졸업생과 교환학생 신분이 아니기에 자격 상실 사유는 휴학 조항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조항으로 좁혀진다.

문 회장이 학기 중 휴학을 신청해 휴학생 신분이 됐다면 이는 총학생회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총학생회칙 보칙 제9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는 임기 동안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며, 재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를 명시한 대표자 휴학 요청서를 제출하고 휴학 요청서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학생에게 공개하며, 중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그 권한과 의결권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 회장이 대표자 휴학 요청서를 중운위 및 학생에게 공개한 바는 없으며, 중운위 역시 문 회장의 휴학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문 회장이 휴학생이라면 현재 학생 대표로서 가지는 권한은 총학생회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다.

교내 회의체 국제캠 1인이 문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권 부회장으로 교체됐다.

만일 문 회장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를 직접 알리지 않는 이상 징계를 심의하는 학생 상벌 위원회와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유관부서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실을 알 수 없다.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7조는 학생 상벌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징계 여부를 묻는 우리신문의 질문에 학생지원센터 김효수 센터장과 김성희 계장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도 문 회장이 가지는 회장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다. 학칙에 학생 대표자 직무 수행 중 징계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생활 규정 제11조는 학생회 및 단체 임원은 재학생으로서 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선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선출될 기준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총학생회칙 60조 역시 학생 대표가 회칙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탄핵 의결 또는 본인의 의사 표명에 의한 사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임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직원 A 씨는 "총학생회장이 징계를 받는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며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칙에 징계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운위는 문 회장으로부터 어떤 사실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 김지영(산업디자인학 2020) 회장은 "해당 사실에 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 방태웅(국제학 2019) 회장 역시 "처음 듣는 얘기다"고 답했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박유성(중국어학 2018) 회장은 "문 회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으며, 문 회장은 지난 6일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중운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우리신문은 문 회장에게 징계 여부를 물으며 취재를 요청했으나 문 회장은 "학칙에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에 관한 책임 규정이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사퇴나 탄핵 외의 이유로 해임되지 않는다는 총학생회칙이 현재 학칙에 불합치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학생회장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신분을 전제로 하는데, 총학생회칙은 학칙에 의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전했다. 이어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과 같은 징계를 받아 학생 권리가 정지된 학생은 학생회장도 될 수 없고 학생회장이었던 자는 학생회장 자격을 상실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상태에서 학생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학칙 위반이고, 정당성도 없을 것"이라고 학칙과 총학생회칙을 해석했다.

최 교수 징계로 인해 명예교수 임명 미지수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서울】 최정식(철학) 교수의 위안부 발언에 징계를 촉구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최 교수 징계 여부와 명예교수 임명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최 교수는 본인의 수업과 일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위안부 관련 발언과 번복을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발언으로 본교 이미지와 명예 훼손, 감사팀 조사 이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진행 등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 경징계 처분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 교수 징계 여부는 아직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1일,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우리학교에 최 교수 징계를 촉구하며 관련 조치계획 및 이행 결과를 23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23일, 우리학교 교무처 교무팀은 국회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최 교수의 징계 진행 현황 및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조치계획에 따르면 최 교수는 정부포상 추천 제외 요건에 해당돼 포상 추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 측은 우리학교에 최 교수 엄중 조치, 명예교수 임명 불가, 최 교수 퇴임 후 어떤 포상도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한편 최 교수의 퇴직은 내년 2월로, 명예교수 임명 절차는 12월 초 이뤄질 예정이었다. 교육부령 제5조에 따르면 명예교수는 전공 분야의 연구 활동과 특별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 교수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임명 제외 요건인 재직 중 징계를 받은 교원, 재직 중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있다에 해당돼 명예교수 임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